

변경 대비 표

1. 대상펀드:

no.	펀드명	명칭 변경	모자형 전환	운용역 변경	환매수수료 삭제	법 개정
1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2호(주식)	○	○	○	-	○
2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4호(주식)	○	○	○	○	○

2. 효력발생일: 2019년 05월 08일 (수)

3. 변경사항:

- 1) 투자신탁 명칭 변경
- 2) 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변경
- 3) 운용역 변경
- 4) 환매수수료 삭제
- 5)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

4. 변경내용

1) 투자신탁 명칭 변경

변경 전	변경 후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 <u>투자신탁2호(주식)</u>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 <u>자투자신탁2호(주식)</u>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 <u>투자신탁4호(주식)</u>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 <u>자투자신탁4호(주식)</u>

2) 모자형 전환으로 인한 변경

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모투자신탁2호(주식)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 <u>자투자신탁2호(주식)</u>	80% 이상

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모투자신탁2호(주식)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모투자신탁4호(주식)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 <u>자투자신탁4호(주식)</u>	합산하여 80% 이상

<집합투자규약>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조(용어의 정의)	1.~7. <생략> <u>8. <신설></u>	1.~7. <현행과 동일> <u>8. "모자형"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(모집합투자기구)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</u>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① <생략> ② <생략> 1.~5.<생략> <u>6. <신설></u> ③ <생략> ④ <생략> ⑤ <신설>	① <현행과 동일> ② <현행과 동일> 1.~5.<현행과 동일> <u>6. 모자형</u> ③ <현행과 동일> ④ <현행과 동일> <u>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<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2호(주식)></u> <u>1.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모투자신탁2호(주식)</u> <u><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4호(주식)></u> <u>1.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모투자신탁2호(주식)</u> <u>2.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모투자신탁4호(주식)</u>
제 16 조(투자목적)	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, 일부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17 조(투자대상자산 등)	(생략)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<u>1. 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</u> <u>2.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u>
제 18 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(생략)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<u><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2호(주식)></u>

		<p>1. 제3조제5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제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2.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 다만,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의 범위내에서 20%를 초과할 수 있다.</p> <p><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4호(주식)></p> <p>1. 제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제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2.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한다. 다만,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의 범위내에서 20%를 초과할 수 있다.</p>
제 19 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(생략)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.</p> <p>가.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
<p>제 20 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</p>	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.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.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4호 내지 제8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.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.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.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.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<p>③ 제19조제2호 본문,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</p>	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<좌동>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<p>②~④ <삭제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

	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	
제 25 조의 2(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)	<신설>	<u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.</u>
제 26 조의 2 (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)	<신설>	<u>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
제 27 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①~③ <생략>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 <u>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u>	①~③ <현행과 동일>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 <u>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u>
제 30 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①<생략>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[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]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	①<현행과 동일>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(<u>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</u>)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[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]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
제 37 조(수익자총회)	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,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.	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, 수익자총회는 <u>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</u>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

	<p>②~⑨ <생략> ⑩ <신설></p> <p>⑪ <생략></p>	<p>결의할 수 있다. ②~⑨ <현행과 동일 > ⑩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,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⑪ <현행과 동일></p>
<p>제 50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	<p>① <생략>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 ~5. <생략> ③~④ <생략>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⑥~⑫ <생략></p>	<p>① <현행과 동일>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 ~5. <현행과 동일> ③~④ <현행과 동일>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(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)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⑥~⑫ <현행과 동일></p>

<투자설명서>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투자목적>	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을 법 시행령 제94 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, 일부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.	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

<p><투자전략></p>	<p>①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 60% 이상 투자합니다.</p> <p>② 주식은 개별 기업의 가치 및 위험 등에 대한 내재적 가치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과 경제 환경 등에 대한 거시경제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.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운용은 높은 매매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국내 채권 등의 다른 증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</p>	<p><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2호(주식)></p> <p>① 이 투자신탁은 "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모투자신탁 2 호(주식)"에 80% 이상으로 투자합니다.</p> <p><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4호(주식)></p> <p>① 이 투자신탁은 "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모투자신탁 2 호(주식),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모투자신탁 4 호(주식)"에 80% 이상으로 투자합니다.</p> <p>②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.</p> <p>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</p> <p>①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 60% 이상 투자합니다.</p> <p>② 주식은 개별 기업의 가치 및 위험 등에 대한 내재적 가치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과 경제 환경 등에 대한 거시경제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.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운용은 높은 매매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국내 채권 등의 다른 증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

3) 운용역 변경

변경 전	변경 후
구용덕	송진용

4) 환매수수료 삭제

<집합투자규약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제41조(환매수수료)	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<u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<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<u>환매수수료 없음</u>

5)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<p>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</p>	<p>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 (좌동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</p>
제49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<u>3.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</u></p>

<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<p>제5부. 2. 집합투자기 구의 해지 에 관한 사 항 [의무해지]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장폐지된 경우(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) /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/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. 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장폐지된 경우(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) /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/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/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-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.
--	---	---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